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7. 4.24
 개정 2008. 5.20
 2010. 5.25
 2015. 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 임원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관장 후보자의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
5. 기타 임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의 경우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밖의 경우는 결원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정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2분의 1 미만,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15. 9.25>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중 1인은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되, 별도의 소비자원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로부터 복수로 추천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은 소비자원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5. 9.25>

제5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의견진술 요구 등) 위원회는 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임직원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임원 후보자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0. 5.25>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0. 5.25><개정 '15. 9.25>

⑤후보자를 추천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 학계·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5. 9.25>

⑥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15. 9.25>

제10조(제출서류)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사진첨부)
2.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소비자정책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영자로서의 자질, 능력 및 성품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관리자로서의 조직관리 기본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조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과거의 경력 및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응모자 또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총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의 경우 업무 성격,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8.5.20>

②단,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5. 9.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5. 9.25>

④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5. 9.25>

⑤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 또는 추천된 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별표1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08.5.20><개정 '15. 9.25>

⑥심사 시 위원이 특정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후보자 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08.5.20>

⑦응모자 및 추천된 자는 특정 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08.5.20><신설 '15. 9.25>

⑧위원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08.5.20><신설 '15. 9.25>

제13조(원장후보자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후보자를 선정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능력·성품과 조직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3.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원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신설 '15. 9.25>

제14조(경영계약안 협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들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부원장 및 이사 후보자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부원 장 및 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관의 경영자로서의 자질·능력·성품과 조직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3.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원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신설 '15. 9.25>

제16조(소비자안전센터 소장 후보자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관의 경영자로서의 자질·능력·성품과 조직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3.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원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신설 '15. 9.25>

제17조(비상임감사 후보자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비상임감 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공공기관 감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2.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능력을 갖춘 자
3. 기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원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신설 '15. 9.25>

제18조(임원후보 추천) ①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 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 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08.5.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법 제 2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서 : 서식 1
2. 세부 추천사유 : 서식 2
3.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 서식 3
4.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5.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서식 4 <개정 '08.5.20><개정 '15. 9.25>

③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5. 9.25>

④위원회가 전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5. 9.25>

⑤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15. 9.25>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소비자원의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직제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출석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07. 4. 24)

①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08.05.20>

①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5.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9.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08. 5.20>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소양 보유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의 대응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비하여야 함.
부원장 및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소양 보유 ○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에 있어 요구되는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및 협력·조정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안전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소양 보유 ○ 소비자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및 협력·조정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감사에 관하여 상당한 소양 보유 ○ 소비자원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 도덕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서식 2] 세부 추천사유(후보자별 상세사유 4~5가지 이상 기재)

<신설 '15. 9.25>

성 명	현 직	추천 사유
		<p>* 해당직위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설명을 기술</p> <p><기관장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학력, 경력,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전문성, 공익성 등이 있는 지 - (예) 어느 면에서 기업경영과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 - (예) 어느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지 - (예) 후보자의 어느 분야 경력(또는 경험)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지 등 <p><견제임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학력, 경력,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어느 분야의 전문성, 공익성 등이 있는 지 - (예) 공공부문에서 어느 업무경험이 있는 지 - (예) 견제임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어느 경력에 근거하여 갖추었는 지 - (예) 어떤 분야의 경력(또는 경험)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지 등

[서식 3]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신설 '15. 9.25>

1. 선발 개요

선발 직위

- ○○직위(○○○)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발

선발방법

- 근 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 법 : 공개모집
- 모집의 세부내용

구 분	기 간	인 원	접수 기간	비고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 ※ 1차 : , 2차 : , 3차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 응모자 명중 명을 ○○직위 후보자로 추천

2. 모집 개요

공개모집 공고

- 일간지 : ○○신문 공고(○○.○○.○○)
- 홈페이지 :
- ※ 접수기간 : ○○.○○.○○~○○.○○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〇〇명 (접수순)

응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비고
1			※최근 경력부터 45개 기재	
2				
3				
4				
5				
6				
7				
8				
9				
10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총 ○명)

유형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비고
비상임이사 (○명)				
이사회추천 (○명)				

[서식 4]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신설 '15. 9.25>

성명	출생	학력	주요경력

< 참고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강원, 서울)
- * 생년월일은 예(50.6.25)에 따라 기재
- * 여성의 경우, 성명 밑에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